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한 피해자 보호법 제정 촉구 건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95

2022년 12월 22일
보건복지위원회

Ⅰ.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2년 10월 17일 이병도 의원외 22명
2. **회부일자** : 2022년 10월 21일
3. **상정일자** : 제315회 정례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

【2022년 12월 19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이병도 의원)

1. 제안이유

○ 우리의회는 지난 9.22. 「스토킹 처벌 실효성 강화와 피해방지를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여 피해자 처벌의 필요성과 보복범죄의 방지를 건의한 바 있음.

○ 이후 여러 법률안에서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한 개정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스토킹범죄의 처벌강화가 목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가장 중요한 피해자 보호에는 소홀하다는 비판이 있음.

○ 스토킹 범죄의 대응에서 피해자가 배제되어 있는 현 제도는 개선되어야 하며 스토킹피해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입법이 시급함.

○ 이에 피해자보호를 최우선으로 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의 개선, 국선변호인제도 도입, 피해자불이익 금지 신설 제도를 도입하여 시민의 불안감을 잠재우고 스토킹범죄에서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하여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신속한 제정을 건의함.

2. 참고사항

○ 관계법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3. 이송처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 정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Ⅲ.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박지향)

1 건의안의 내용

○ 동 건의안은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함)이 가해자 처벌위주로 규정되어 피해자에 대한 보호제도를 마련하고 폭넓은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촉구하기 위함임.

2 주요사항 검토

□ 현행법상 피해자 보호 관련

○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총 21개 조문으로 3개의 장(총칙, 스토킹범죄 등의 처리절차, 벌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2장에서 다루고 있는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의 경우 위반시 처벌이 약하고 피해자에게 통지 규정이 미비하여 실질적으로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고, 제3장에서는 스토킹범죄 처벌규정을 다루고 있어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 현재 국회에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정춘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15317호)과 정부가 제출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15426호), 2개가 계류 중인 상태임.

□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강화 및 피해자 고지절차 관련

○ 현행 「스토킹처벌법」 법률에서는 피해자보호를 위해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의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 다만 현행법상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과태료 부과[1]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고 긴급응급조치 한 경우에만 피해자 등에게 통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가 변경·취소된 경우 피해자에게 통지하는 규정이 없음.

○ 스토킹범죄는 지속·반복적인 행위로 나타나는 만큼 피해자에게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통지 뿐만 아니라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등 가해자에게 내려진 조치의 내용과 기간 등에 대한 통지가 필요해 보임.

□ 국선변호인 지원제도 도입 관련

○ 건의안은 스토킹범죄가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사후 처벌보다는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선변호인 지원제도의 신속 도입을 촉구하고 있음.

○ 국선변호인 지원제도는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범죄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응급조치(검사가 제5조제2항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법원 판사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③ (삭제)

선정하여 사건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형사절차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조력을 지원하는 것으로 2012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피해자를 법적으로 조력할 수 있도록 최초로 도입되었음.

○ 보복이나 2차 피해 때문에 법정 출석을 꺼리는 피해자를 대리해 피해 사실을 법정에서 증언하는 역할을 맡기기 위한 것으로 국선변호인 지원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3 종합 의견

○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보호가 아닌 가해자 처벌 위주의 법률로 피해자에게 폭넓은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본 건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지난 2022. 10. 19. 법무부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도입, 피해자 신변안전조치 도입 등 피해자보호 강화를 위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2] 한 바, 스토킹범죄 피해자뿐만 아니라 범죄 피해 방지를 위하여 스토킹범죄 전단계의 스토킹행위의 상대방 등 예방적 차원의 추가적인 입법 검토가 필요해 보임.

○ 또한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를 2022. 9. 28. 제정하여 2022. 10. 17. 공포·시행하고

2) 법무부, 보도자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입법예고, 2022.10.19.

있어 상위법 제정을 통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지원 관련 보다 안정적인 정책이 시행될 수 있다고 판단됨.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토론요지 : 「없음」

Ⅵ. 심사결과 : 원안 가결

Ⅶ.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한 피해자 보호법 제정 촉구 건의안

(이병도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95

발 의 년 월 일: 2022년 10월 17일
발 의 자: 이병도, 경기문, 김성준, 김인제, 남창진, 박강산, 박상혁, 박영한, 박유진, 박칠성, 서상열, 서준오, 성흠제, 왕정순, 유정인, 이민옥, 이영실, 이종태, 임종국, 정준호, 최기찬, 허 훈, 홍국표 의원(23명)

1. 주문

○ 스토킹 가해자의 처벌에 치우쳐 있는 현행 법률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근본적인 범죄 대응방안으로 피해자보호 강화 및 지원으로 인식을 전환함으로써 반복되는 사회적 비극을 방지하고 스토킹으로부터 안전한 서울을 위하여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함.

2. 제안이유

○ 우리의회는 지난 9.22. 「스토킹 처벌 실효성 강화와 피해방지를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여 피해자 처벌의 필요성과 보복범죄의 방지를 건의한 바 있음.

○ 이후 여러 법률안에서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한 개정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스토킹범죄의 처벌강화가 목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가장 중요한 피해자 보호에는 소홀하다는 비판이 있음.

○ 스토킹 범죄의 대응에서 피해자가 배제되어 있는 현 제도는 개선되어야 하며 스토킹피해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입법이 시급함.

○ 이에 피해자보호를 최우선으로 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의 개선, 국선변호인제도 도입, 피해자불이익 금지 신설 제도를 도입하여 시민의 불안감을 잠재우고 스토킹범죄에서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하여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신속한 제정을 건의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4. 이송처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한 피해자 보호법 제정 촉구 건의안

○ 최근 신당역 살인 사건 등 잇따른 범죄발생으로 스토킹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매우 높아졌고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 스토킹범죄 처벌의 목적을 생각해 보면, 처벌강화를 통하여 결국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현행 법률에는 가해자처벌에 치중한 나머지 정작 중요한 피해자 보호는 소홀한 현실입니다.

○ 현재 국회에 스토킹과 관련된 22개의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 피해자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안은 정부안을 포함한 2개에 불과하여 인식의 전환이 시급합니다.

○ 현행 스토킹 처벌법은 피해자보호가 아닌 가해자 처벌 위주의 법률임.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피해자는 사건 초기부터 배제되어 있습니다.
피해자는 스토킹처벌법으로 경찰에 신고한 이후에도 사건의 진행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합니다. 신고시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에 대한 안내를 받기는 하지만 이후 응급조치신청이 받아들여졌는지, 가해자에게 언제까지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 가해자에게 내용통지와 불복절차를

안내하면서 정작 중요한 피해자에 대한 고지절차는 법률에 없습니다.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피해자 보호가 아닌 경찰과 법원간의 행정절차로 보는 인식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 긴급응급조치가 서면경고에 불과하다 보니 막상 응급조치가 이루어져도 피해자에게 또 연락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법률의 미비 속에 스토킹피해자의 하루하루가 방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 스토킹범죄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으로 생각을 전환해야 합니다. 그것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추가범죄를 막는 첫걸음입니다.

○ 우선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의 신청 절차를 간단히 해야합니다. 지금처럼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경찰-검찰-법원을 거치는 절차에서 경찰 단독으로도 적극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 제도는 최대 2개월이 지난 후 자동으로 실효됩니다. 응급조치 실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기간연장할 수 있는 폭넓은 판단이 필요합니다.

○ 긴급응급조치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변경요청이 없는한” 계속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가해자의 모든 행동자유를 억제하는 것이 아닌, 피해자에 대한 접근만을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과잉금지가 아닙니다.

○ 다음으로 피해자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성범죄에서와 마찬가지로 스토킹범죄도 의무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 법적인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또한 피해자가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직장, 사회에서 피해자의 스토킹대응에 대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 신당동 역무원 살인사건에서도, 긴급응급조치 이후 스토킹이 없었다고 하여 소홀히 판단한 것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회사에서 피해를 볼까봐 주변에 적극적으로 알리지도 못하고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지, 우리는 직접 보았습니다.

○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지 1년이 채 안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많이 이슈가 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에 스토킹이 만연해 있고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많다는 방증입니다.

○ 이에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는 더 이상의 사회적 비극을 막고 안전한 시민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스토킹범죄의 근본적인 정책방향으로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인식하여야 함을 요청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국회에 계류 중인 스토킹피해자보호법을 신속히 통과시켜 하루 속히 피해자를 지원하고 보호정책을 시행하라.

하나, 가해자 처벌강화보다 중요한 것은 스토킹피해자 보호임을 인식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할 수 있는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강화하고 피해자 고지절차를 신설하라.

하나, 스토킹범죄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강력범죄임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선변호인 지원제도를 신속히 도입하라.

하나,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스스로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깨닫고 대응할 수 있도록 스토킹피해자 보호에 대한 인식개선 및 지원을 즉각 시행하라.

2022. 10. .

서 울 특 별 시 의 회 의 원 일 동